
Policy and Law Report _Vol.101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8.27 ~ 9.5) -

September 6,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신산업 TF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신산업 TF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대 신산업 분야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함 민간투자 방향,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성장가능성, 우리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지원 대상 신산업 후보 및 성장 요인으로는 ① (클라우드) AI·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경제 기반산업+비대면 활동 증가로 지속성장 예상 ② (블록체인) ICT와 他산업의 융복합을 가능케 하는 기술+비대면 경제 신뢰·투명성 확보에 기여 ③ (지능형 로봇) 노동인구 감소와 코로나 시대 안전·편안한 삶을 위한 기술적 대안 ④ (디지털 헬스케어)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발전+치료에서 예방·관리·모니터링 중심으로 전환 (Cure→Care) ⑤ (메타버스) 코로나로 대면활동 제약+게임 위주에서 소통·공연 등으로 영역 확대 등이 있음	2021-08-27
	• 「제14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14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을 추진중이나, 전기차 전문정비소 및 관련 인력·장비가 부족하고 검사·정비체계도 미흡함 •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의 검사·정비생태계 본격 구축 ② 시장선도형 첨단센서, K-센서 기술개발 강화방안 • 빛, 소리 등을 감지,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첨단센서는 자율차, 바이오, 모바일 등 미래 산업 핵심부품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급속성장 중이나 우리는 2% 점유에 불과 • 단기상용화 기술, 차세대 센서소자 등 핵심기술, 센서 기반기술 등 약 2천억원 규모 K-Sensor R&D사업('22~'28)을 통해 2030년에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 • 나노종합기술원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Sensor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 통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2021-08-30

부처	내용	일시
	③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 지난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제조업내 비중이 약 10%(14년 7.1%→19년 9.4%), GDP대비 비중이 약 2.5%수준(14년 1.9%→19년 2.4%)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 선도기업은 사실상 부재 • 정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의 엄선 및 집중지원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집중 육성 목표 • 혁신형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복단지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R&D를 기획 추진('21년)하고 1천억원 규모 전용정책펀드 조성 검토('22년) • 아울러 첨복단지재단 인프라 이용수수료를 할인(15%)하고 시제품 제작,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까지 쉐도우 주기 지원과 함께 건보상 약가우대 검토 및 혁신수가 근거 축적	
산업통상 자원부	• 「제2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부창출형 통상 5대 전략 분야 추진 방향을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부창출형 통상 추진 방안 • (공급망) 美 행정명령 발표('21.2월)* 등 주요국들이 동맹국 공조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역할을 위한 통상 강화 추진 * (4대품목)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광물자원 공급망 검토 100일 보고서 발표('21.6) (6대산업) 방위, 공공보건, 기술·통신, 에너지, 수송, 식량 공급망 1년 이내 검토('22.2) • (디지털)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내 디지털 성장 기반을 마련 • (백신)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통한 팬데믹 종식 기여 및 백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을 위한 통상 부분 역할 확대 추진 • (탄소중립·기후변화) EU CBAM 입법안 발표('21.7) 등 통상 규범화에 대비한 대응 강화 및 우리 기회 요인 발굴·지원 방안 마련 ②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下 기술통상 전략 • (기술진흥:promotion) 기술성숙도, 시장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 대상국을 선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추진 • (기술보호:protection) 산업기술보호·수출통제·투자심사 등 3대 주요 정책수단을 통해 우리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	2021-09-02

부처	내용	일시
	③ CPTPP* 검토 현황 및 대응 계획 • 지난 1.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는 대외협약, 4대 규범(디지털 통상,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위생검역) 국내 제도 정비 등 CPTPP 가입 관련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④ RCEP* 비준 및 발효 추진 계획 •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15개국 정상은 약 8년간 진행된 RCEP 협상을 마무리 하고 협정문에 최종 서명 • 그간 정부는 협정문 검토, 영향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조만간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환경부	•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법제화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통과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9월 중 공포될 예정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의 주요 의미로는 ①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법제화 ② 2050년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하는 중간단계 목표 설정 ③ 미래세대, 노동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법제화 ④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 마련 ⑤ 탄소중립 과정에 취약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구체화 ⑥ 중앙 일련도의 대응체계를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 등이 있음	2021-08-31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1.8.31. 시행) 가스도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천연가스 재고량을 산정할 때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량으로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물량은 제외하고 비축 물량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천연가스 의무 비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021-08-31
환경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1.8.31.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을 감축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전년도 대비 인구 1인당 폐기물 소각·매립 처분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90을, 증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지급하는 등 교부금에 차등을 두려는 것임	2021-08-31
국토 교통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22.2.11. 시행예정)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마감재료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명 이상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941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를 공장, 창고시설 등에서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단열재가 외기(外氣)에 노출되는 경우로 정함 한편,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09-03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문화체육 관광부	• 「<u>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 비영리 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법률 제21조 개정, '20.12.8.)에 따라 대상 게임물을 명확히 하고,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도입 관련 과태료 규정이 개정됨(법률 제48조 개정, '20.12.8.)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는 등 하위법령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등급분류 면제 대상 게임물 대상 명확화 (안 제11조의3) - 게임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개인·동호회 등이 단순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임을 명시하여 등급분류 면제대상의 명확화 ②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안 별표4) - 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자료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1,000만원) 추가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8/30(월)~10/5(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로 제출	2021-08-30
산업통상 자원부	• 「<u>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u>」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직수입자에 대한 비상수급 위기시 조정명령 구체화 (안 제20조) - 비상 수급위기시 가스도매사업자와의 물량교환 등 직수입자가 수급안정에 협력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사항 규정 ②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요청할 보고사항의 세부 규정 추가 (안 제23조) - 조정명령 이행실적, 자가소비·교환·판매계획·실적, LNG 도입계획·실적 등 국가 LNG 수급 관련 주요 사항 규정 ③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등과 교환 허용 (안 제6조 및 제6조의12)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와 직수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천연가스 교환 허용	2021-08-3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④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관련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안 제26조의2)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사업등록·변경등록, 수입·수출·수송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허용 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2) ※ 의견제시기간 : 8/30(월)~10/12(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로 제출	
국토 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를 확대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정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을 추가하며,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을,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등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특례를 '25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주민제안시 동의요건 신설 (안 제19조의2제2항) –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②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 주민공고 매체 확대 (안 제22조제2항, 제70조의13 제1항) –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로 2 이상의 일간신문 외 지자체의 공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③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 확대 (안 제25조제2항)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④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추가 (안 제52조제1항) – 토석채취량이 5퍼센트 이하 축소된 경우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안 제84조의2제1항, 제93조의2) –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최대 40%)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25년까지 연장	2021-09-0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⑥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건축 허용 (안 별표17) -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⑦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안 별표19) - 자체가 조례로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제시기간 : 9/3(월)~10/1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 제33조에 따른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 내용을 반영하고,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공익법인과 거래 현황 공시 신설 등 자체 공시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 정비 차원의 문구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신설 (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 제3항제1호, 제5조~제11조) - 규정의 제명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동일인의 공시의무 도입에 따라 규정의 목적을 변경 - 동일인은 공시의무 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고, 불성실이행행위에 대해 제재조치 명시 - 공시의무사항은 일반현황, 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 공시기준일 및 시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 연1회 공시 - 공시절차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 수탁기관의 업무 등을 명시 ②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안 제2조제2항) -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공시의무를 면제하되,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를 제외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2021-09-0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집단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④ 상호채무보증 용어 정비 (안 제4조제1항제4호하목)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및 실제 공시상황과 달리 본 규정에서 상호채무보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채무보증으로 용어 정비 ⑤ 공익법인과와의 거래 현황 공시 신설 (안 제4조제1항제4호러목, 제2항제6호, 제5조제1항제1호)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동일 집단 공익법인과 자금, 자산, 상품·용역 거래시 그 현황을 연 1회 공시 ⑥ 기업집단현황공시 공시기준일 합리화 (안 제4조제3항제3호) - 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 공시기준일을 전년도 기업집단지정일 다음 날부터 금년도 기업집단지정일까지로 개선 ⑦ 4분기 기업집단현황 공시기한 합리화 (안 제5조제2항제2호) - 기업집단현황공시 분기별 공시기한을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변경 ⑧ 주요주주의 범위 설정에 따른 공시 반영 (안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따라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시에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변경 ※ 의견제시기간 : 9/3(금)~9/23(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시점검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 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외 경영환경도 급변하면서 기업·투자자간 소통채널로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공시를 확대하여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수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공시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안 제429조제4항) -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5%를)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높여(시가총액 10만분의 1 → 1만분의 1)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② 사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공시 강화 (안 제161조제2항) -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의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③ 신규 상장법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안 제160조제2항) - 신규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와 동일하게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함 ④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안 제429조제3항) -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하향 함으로써(20억원→10억원)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⑤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안 제429조제1항) - 제출되지 않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확인자 등은 있을 수 없으므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 의견제시기간 : 9/3(금)~10/13(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공정시정과)로 제출	2021-09-03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 15인)」 최근,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의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서비스 축소에 따른 환불사태로 인해, 머지포인트를 구입하였던 소비자와 머지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였음 머지포인트를 판매중개한 이커머스(e-commerce)업체들은 타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머지포인트가 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은 사업자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하였음 소비자들은 머지포인트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가 낮음에도 판매를 중개한 다수의 이커머스를 신뢰하여 머지포인트를 구입하였지만, 정작 이커머스 업체들은 입점업체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인지, 신뢰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않아 ‘머지포인트’와 같은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이 소비자에게 유통되게 된 것임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이커머스업체들은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이를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입점사업자들에게 신고·등록·허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입점사업자의 반발과 혼란이 우려됨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9조의2,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2021-08-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와 생계 안정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계약의 갱신, 대리점거래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서 금지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 제5조의3 · 제5조의4 신설, 안 제18조 · 제23조 · 제25조제1항 · 제34조제2항 등)	2021-09-01
기획재정 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접대비는 접대, 교제, 사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소비성 업종에 주로 지출되며,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접대비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비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불하는 부정적인 비용을 연상시키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4항제2호 등)	2021-08-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u>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3천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한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벤처기업 등 신생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 중 하나로 활용되었음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세율 변경으로 인해 20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3천만원 한도 비과세 특례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며, 스타트업의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기업 초기 단계 인재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단계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도 같은 한도의 비과세 특례를 부여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등)	2021-08-27
	• 「<u>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0인)</u>」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함 ESG는 투자자, 고객,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는 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고, 기업들은 ESG 요소를 협력사 선정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점차 제품 및 서비스 선택과정에서 ESG를 고려하는 추세임 연 2400조원 규모 공공조달시장을 가진 유럽연합(EU)의 경우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을 도입하여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공급망 선정에서 인권 환경 지배구조 실사 의무화를 추진중임	2021-08-3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전세계적으로 ESG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들이 빠르게 만들어져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회적 책임 장려” 조항을 신설했으나 자율조항이다 보니 그 5년이 지났음에도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 개선하고, 우리나라도 사회 각 분야에서 ESG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우리나라도 SPP의 실질적 정착을 위하여,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 (안 제1조) ② 공공조달과정에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 (안 제6조)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달기업의 ESG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5조 제1항3호) ④ 조달기업의 ESG 이행 여부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과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제3항 신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전통주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하는 기존의 준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안 제7조의2,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 신설) 한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몰취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부칙 제2조)	2021-09-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u>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 10인)</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2019년 2,088억원에서 2020년 2,756억원으로 2019년 대비 32.3%가 증가하였으며 계속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대형화 추진을 검토하고,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현재는 기존 블록체인의 속도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 기반기술 개발에 매진 중임 블록체인기술을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블록체인기술이나 블록체인산업 등에 대한 정의가 없고,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의 진흥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블록체인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항제11호 · 제12호,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2021-08-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임의자의원 등 10인)」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기성 폐자원을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로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안 제2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③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회수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 ④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및 생산 목표 달성도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⑤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⑥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19조)	2021-09-0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9/8(수)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9/9(목)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9/6(월)	「헌재결정과 법제」 제13호 발간	
	9/10(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55호 발간	
국회도서관	9/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2호 발간 - 유럽연합·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9/8(수) 10:00	제20차 「AI와 국회포럼」 - AI로 외국법 읽다 - 네이버와 공동개발한 일본법 자동번역기 공개	ZOOM
	9/9(목) 14:00	제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 주제: 도서관의 D.N.A.(Data, Network, AI)	유튜브
예산정책처	9/6(월)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 - 지방재정에 대한 해설서 발간을 통한 이해도 및 만족도 제고 - 지방재정 현황 제고를 통한 예결산 심사의 효과적인 지원	
입법조사처	9/6(월) 10:00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간담회 시리즈 1 - 한국 지방소멸위기 실태와 과제	온라인 영상회의
	9/8(수) 14:00	「전문가 간담회」 -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내외 역학관계 전망	온라인 영상회의
	9/8(수) 16:30	「전문가 간담회」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온라인 영상회의
	9/9(목) 10:00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간담회 시리즈 2 - 과소군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온라인 영상회의
	9/10(금) 10:00	「전문가 간담회」 - 우리나라 공공외교 현황과 개선과제	온라인 영상회의

[별첨1] 제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9/8(수) 본회의 산회직후	청문회	대법관 후보자 오경미 인사청문회
예결위	9/6(월) 10: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종합정책질의)
	9/7(화) 10: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종합정책질의)
	9/8(수) 10: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부별심사-경제)
	9/9(목) 10: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부별심사-비경제)
법사위	9/6(월) 14:00	전체회의	현안 질의
	9/7(화) 14:00	예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9/8(수) 14:00	예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외통위	9/7(화) 10: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상정, 법안 상정, 현안 보고
	9/8(수) 본회의 산회직후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9/9(목) 본회의 산회직후	예결산소위	결산 심사
	9/10(금) 10: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법안 의결, 2020국정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 서 등 의결
국방위	9/8(수) 09:30	예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9/8(수) 11: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9/9(목) 14:00	법안소위	법안 심사
행안위	9/8(수) 본회의 산회직후	전체회의	법안 상정 및 의결
	9/9(목) 본회의 산회직후	법안심사1소위	법안 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문체위	9/8(수) 본회의 산회직후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상정
	9/10(금) 10:00	예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농해수위	9/8(수) 본회의 산회직후	전체회의	간사 선임의 건
산자위	9/7(화) 10:00	전체회의	소위 구성 변경의 건, 법안 상정
	9/8(수) 14:00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	법안 심사
	9/8(수) 14:00	중소벤처기업소위	법안 심사
	9/9(목) 11:00	전체회의	법안 의결
국토위	9/9(목) 11:00	국토소위	법안 심사
정보위	9/8(수) 14:00	전체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여가위	9/9(목) 09:30	전체회의	청원심사소위원장 선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법안 상정
	9/9(목) 14:00	예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9/9(목) 본회의 산회직후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7(화) 14:00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	송갑석, 이동주 의원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외	국회 본관 220호
9/8(수) 14:00	대한전기협회 전력정책포럼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이학영 의원실, 대한전기협회	전경련 토파즈홀
9/13(월) 10:00	국회「모빌리티 포럼」3차 세미나 -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의 미래, 로봇틱스	권성동, 이원욱 의원실, 국회「모빌리티 포럼」외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30(월) 13:30	(탄소국경조정!) 산업대응 지원과 입법 과제	한정애, 유의동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외	유튜브 생중계
8/31(화) 13:00	조세지출제도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세제개혁방안	장혜영 의원실	유튜브 생중계
8/31(화) 15:00	탈플라스틱 연속 간담회 (3회차)	강은미 의원실,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유튜브 생중계
9/2(목) 14:00	게임 섯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토론회	조승래, 허은아 의원실	ZOOM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